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 - 10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비율이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로 85% 수준이 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3, 팩스 : 503-9226, e-mail : choijk4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5.

재정경제부

■ 제인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 법규 및 정책동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6개월 평균('06.11~'07.4월)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85퍼센트로 맞추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세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26원”을 “리터당 505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본문중 “리터당 351원”을 “리터당 358원”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6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51원	제3조의2(탄력세율)----- ----- ----- 1.----- -----리터당 505원 2.----- -----리터당 358원